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월 20일, 김남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8. 2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9. 19.) 상정 ·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3. 30.) 상정 · 축조심사 및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3. 3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남희의원)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스톱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 스톱킹 행위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뿐 아니라 연인 관계나 직장동료 등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주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해치는 방식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스톱킹 행위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스톱킹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 보호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스톱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톱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톱킹 범죄의 형량을 상향하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8. 22.)로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8. 22.)로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